

Vehicle Inspection

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 참고 자료



한국교통안전공단
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

한국교통안전공단
검사기준처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부적합 판정 근거

- **(검사의 기준 및 방법)**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3조 및 별표 15
 -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·장비·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실시하며, **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.**
 - **(검사의 실시 등)**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0조 제2항
 -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. 다만,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**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(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**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**이의 시정을 권고** 할 수 있다.
- ☞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15]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, 같은 규칙 **제80조제2항에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**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정기 · 종합검사 부적합 항목 (제80조제2항제1호~제17호)

1. 동일성 확인

- 가.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(자형의 위조 · 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)
- 나.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,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(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)
- 다.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

2. 주행장치

- 가.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
- 나.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
- 다. 휠 및 타이어의 돌출

3. 조향장치의 용접,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·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

4. 제동장치 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

5. 연료장치 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

6. 전기 · 전자장치 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

7. 차체 및 차대

- 가.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, 심한 변형 또는 절손
- 나.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 · 훼손 또는 미설치(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
- 다.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정기·종합검사 부적합 항목 (제80조제2항제1호~제17호)

8.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
9. 물품적재장치 중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·변형
10.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, 일부 탈락·천공 등 심한 훼손
1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
12. 등화장치
 - 가. 전조등·방향지시등·번호등·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,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
 - 나.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
 - 다.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
13. 계기장치 중 운행기록장치·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
14.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·장치
15.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
16. 전기·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
17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 및 안전기준 위배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. 동일성 확인

- 가.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(자형의 위조·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)
- 나.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,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(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)
- 다. 영 제8조제1항¹⁾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

※ 예시사진



차대번호 확인불가



등록번호판 및 봉인 손상



길이 제원허용오차 초과

1) 길이·너비 및 높이, 최저지상고, 총중량, 중량분포, 최대안전경사각도, 최소회전반경,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2. 주행장치

- 가.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
- 나.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
- 다. 휠 및 타이어의 돌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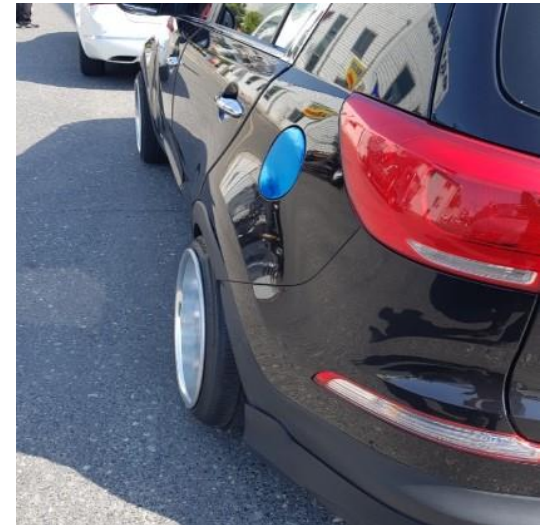
※ 예시사진



타이어 마모 허용기준 미달



타이어 사이드월 손상



휠 및 타이어의 돌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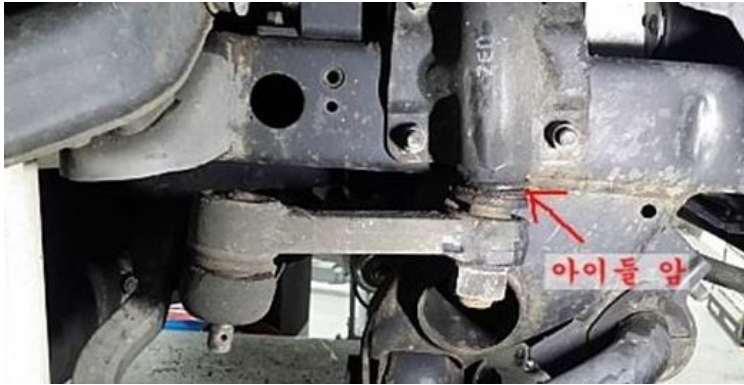
- 휠 및 타이어의 돌출은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5조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를 준용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3. 조향장치의 용접,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 · 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

※ 예시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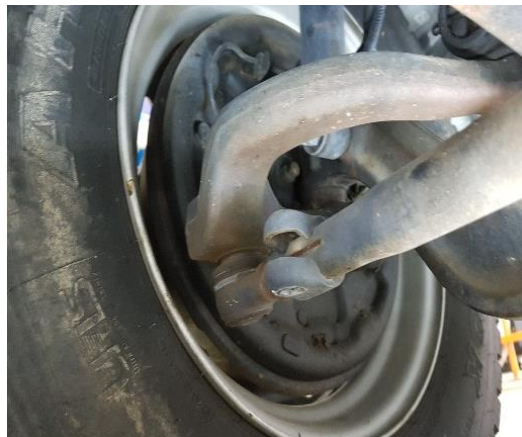
아이들암 마모



타이로드 엔드 마모



섹터 축 변형



타이로드 엔드 설치상태 불량



조향장치 작동유 누유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4. 제동장치 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

※ 예시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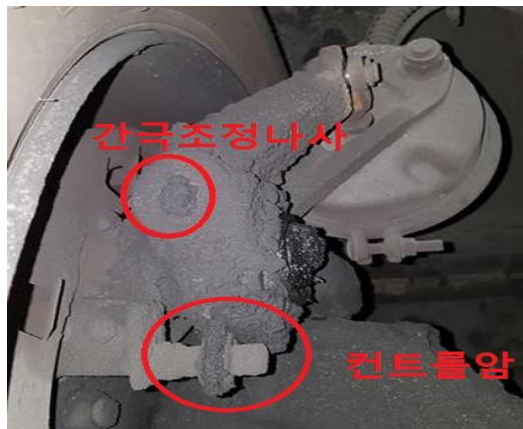
LSPV 손상 또는 설치상태 불량



캘리퍼 누유



공기탱크 부식 및 누설



•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1항제4호

-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.
(라이닝 자동간극 조정장치, 04.7.1.이후 제작 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, 승합, 특수)
- 차량총중량 3.5톤을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은 설치대상 제외

- 구분방법

- 수동조정장치 - 컨트롤암 없음, 간극조정나사 19mm
- 자동조정장치 - 컨트롤암 있음, 간극조정나사 12mm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5. 연료장치 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

※ 예시사진



연료 딜리버리 호스 누유



연료탱크 누유



연료펌프 누유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6. 전기·전자장치 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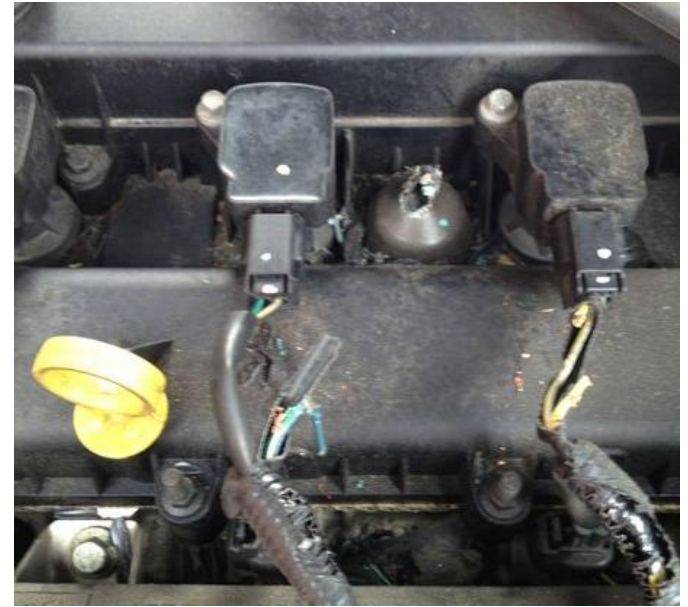
※ 예시사진



실내 연결 배선 피복 손상



불법튜닝으로 인한 배선 손상



인젝터 배선 손상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7. 차체 및 차대

가.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, 심한 변형 또는 절손

나.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·훼손 또는 미설치(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

다.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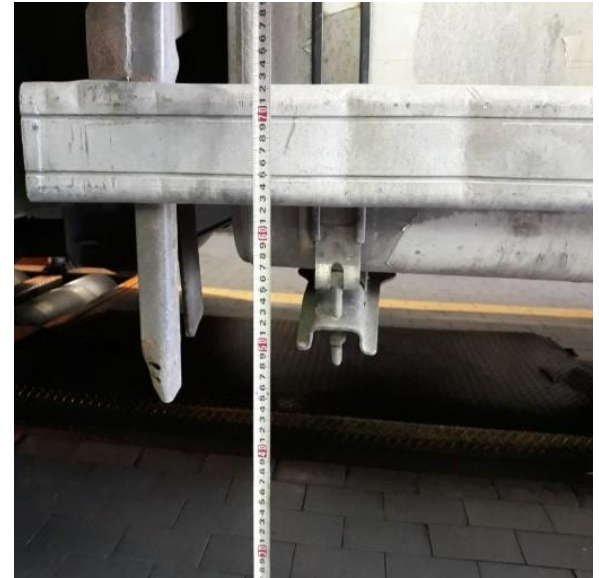
※ 예시사진



차대 부식



후부안전판 안전기준 미달



측면보호대 손상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8.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

※ 예시사진



연결장치 변형 및 손상



연결장치 손상



보조연결장치 없음

•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2항제3호

- 차량총중량 0.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(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)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 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(체인·와이어로프 등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9. 물품적재장치 중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,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·변형



- 위험물 :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
- 유해화학물질 :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,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
- 폐기물 : 쓰레기, 연소재, 옌, 폐유, 폐산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0.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, 일부 탈락·천공 등 심한 훼손

※ 예시사진



창유리 파손



창유리 천공



•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4조제1항

-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·플라스틱 조합유리로,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, 접합유리, 복층유리, 플라스틱유리 또는 유리·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 및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

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 (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)

- ① 자동차[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(이하 "이륜자동차"라 한다)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의 소유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2호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[별표 22]
- 정밀검사의 방법·기준 및 검사대상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[별표 26]

•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37조 (운행차의 정기검사)

-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2호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 - 1.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 - 2.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
 - 3.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

-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·기준 및 대상 항목
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15]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2. 등화장치

- 가. 전조등 · 방향지시등 · 번호등 ·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,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
- 나.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
- 다.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

※ 예시사진



제동등 미점등



택시표시등 자동점등상태 불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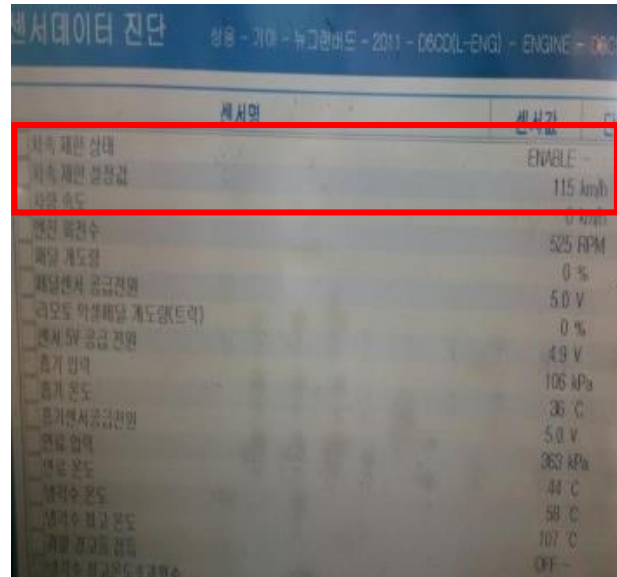
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3. 계기장치 중 운행기록장치 · 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

※ 예시사진



운행기록장치 작동상태 불량 속도제한장치 설치상태 불량

속도계 작동상태 불량

- 운행기록장치 설치대상 -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1항
- 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-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4조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4.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·장치

※ 예시사진



승차장치 임의변경



적재장치 임의변경



등화장치 임의변경(경광등)

• 튜닝승인대상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제1항

- 구조 : 길이·너비 및 높이, 총중량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
- 장치 : 원동기 및 동력발생장치, 주행장치(차축에 한정), 조향장치, 제동장치, 연료장치 및 전기·전자장치, (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한정), 차체 및 차대,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,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, 소음방지장치,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, 등화장치,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,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5.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

※ 예시사진



좌석안전띠(고정버클)손상



좌석 및 좌석안전띠 탈거



좌석안전띠 탈거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6. 전기·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

1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 자동차

① 계기판 경고등을 통한 확인

- Key On 시 계기판의 경고등 점등을 통하여 확인
- ※ 단, 제작사별로 경고등의 형상이 상이할 수 있음



② 스위치 조작을 통한 확인

- 계기판 주변부 스위치를 확인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
- ※ 단, 제작사별로 스위치의 위치 및 픽토그램(pictogram)이 상이할 수 있음
- 스위치 조작을 통한 경고등 점등 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



③ 자동차 외관을 통한 확인

- 차로이탈경고장치 카메라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레이더 커버 등의 설치상태를 육안을 통해 확인



- 국내 제작사별 대형자동차 카메라 및 레이더 사진

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6. 전기·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

2.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사업용 자동차
- 차로이탈경고장치의 본체(카메라) 및 디스플레이 모듈(인디케이터) 등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

차로이탈경고장치 본체(카메라) 및 디스플레이 모듈(인디케이터)



차로이탈경고장치 진동모터(시트에 장착)

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6. 전기·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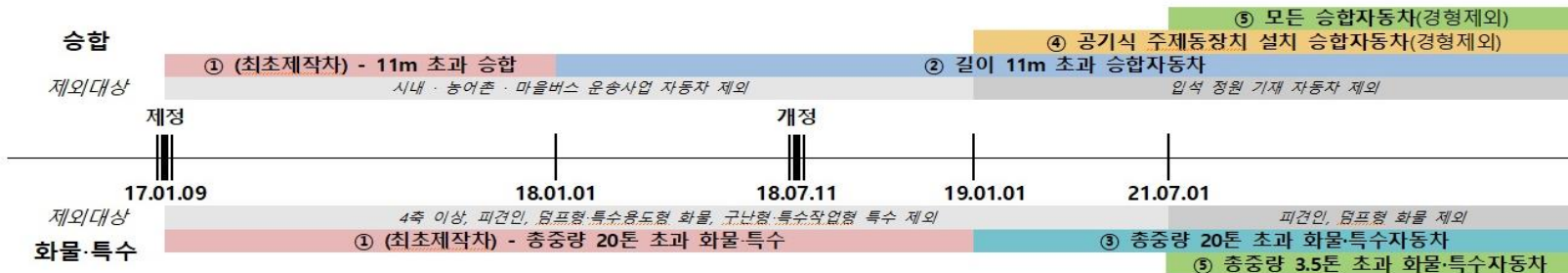
법령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대상 및 제외대상

1.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'차로이탈경고장치' 및 '비상자동제동장치' 의무 설치 대상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) 및 제15조의3(비상자동제동장치)	
<17.1.9. 제정> ○ (설치대상)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 자동차 ○ (제외대상) - 4축 이상 자동차 - 피견인 자동차 - 덤프형·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-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 운송사업 자동차 ○ (시행일자) - 시행일 이후 최초 신고된 형식의 자동차(최초제작차*)는 바로 적용 ① - 규칙 시행 당시 제작·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(부칙 제4조) •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: 2018년 1월 1일 ② •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 : 2019년 1월 1일 ③	<18.7.11. 개정> ○ (설치대상) 승합자동차(경형승합 제외) 및 차량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 ○ (제외대상) - 피견인 자동차 - 덤프형 화물자동차 -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-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의 곤란 또는 불필요함을 인정한 자동차 ○ (시행일자) -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: 2019년 1월 1일 ④ - 가목외의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: 2021년 7월 1일 ⑤

* 최초제작차 : 동일차종 없이 새로운 차대·차체로 제작된 자동차로서 최초로 신고된 자동차 (제원관리번호 9자리 또는 형식승인번호 6자리 신규 부여)

* 동일차종 : 차명이 같고 차대 및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
 - 자기인종 차량 : 제원관리번호 9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 (예 : A08-1-00123-0001-0002)
 - 형식승인 차량 : 형식승인번호 6번째 자리까지 동일하고 축간거리가 같은 경우 (예 : 1-00456-0003-0004)



2.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'차로이탈경고장치' 의무 설치 대상 <2017.1.17. 제정, 2017.6.17. 시행>

- (설치대상)
 - 길이 9m 이상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·특수 자동차 (연식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)
 - ※ 기존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, 2020년 1월 1일부터 미장착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
- (제외대상)
 - 덤프형 화물자동차 - 피견인 자동차 -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-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의 곤란 또는 불필요함을 인정한 자동차

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

부적합 판정 항목

17.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(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) 및 안전기준 위배

※ 예시사진



부착 위치 등으로 판단할 때
장치보호 목적으로 볼 수 없는
퓨즈의 설치



모듈개조(Off 스위치 설치)



Off 스위치 별도 설치